

## 2005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대학경쟁력 강화의 전략과 과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05. 6. 30(목)부터 7. 2(토)까지 대구 인터볼고 호텔에서 2005년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대학경쟁력 강화의 전략과 과제'를 대주제로 하여, 금년 초부터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대교협의 대학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분야별 7개 위원회 활동 결과를 전체 대학 총장들에게 보고하고 개별 주제에 대한 심화 토론을 거쳐, 위원회별로 다음 내용을 결정하였다.

- 대학입시제도개선 소위원회(위원장, 김의환 칼빈대 총장/강우정 한국성서대 총장)의 경우, 논술 형태를 대학에 일임하여 다양화함으로써 변별력 있는 입학 사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여입학의 전면 허용은 국민 정서상 시기상조이지만 기여금의 용도, 기여입학자격의 강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점을 보완하면 대학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므로 도입 허용을 건의기로 하였다.

- 산학협력 소위원회(위원장, 윤진식 서울산업대 총장)에서는 1) 산학협력단을 대학의 조직으로 명기하여 행·재정 등 관련 업무의 통합 운영, 세금 관련법의 개정 및 회계 운영 제도 보완, 교비 및 대응자금 운영 개선 필요, 2) 학교기업 관련 사항으로서 사립대학의 학교기업 회계를 산학협력단 회계로 통합 운영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 지역균형발전 소위원회(위원장, 김달웅 경북대 총장)에서는 로스쿨 배정에서 지역균형 배분의 원칙에 따라 지방대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비수도권 대학에서 수도권대학으로의 편입이 제도적으로 금지될 수 있도록 편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 국제화 소위원회(위원장, 박찬모 포항공대 총장)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 유치 강화를 위하여 출입국 절차 간소화, 학위취득 후 일정기간 연수 희망자를 위한 비자제도 보완, 해외 거주 외국인 학생을 위한 온라인 교육과 병행하여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할 경우 관련 규정 완화, 한국어 활용능력이 필수적인 전공인 경우 입학조건에 한국어능력 측정 또는 한국어학연수 필수화 등의 사항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 구조조정 소위원회(위원장, 김재기 순천대 총장)에서는 1) 정부는 대학이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법령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행·재정 지원 의지를 보여줄 것, 2) 획일적인 구조조정에서 탈피하여, 대학의 규모, 여건, 특수성 등을 고려한 차별적 구조조정을 시행할 것 등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 대학재정확충 소위원회(위원장, 정창영 연세대 총장)에서는 1)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OECD 평균수준인 GDP대비 1% 수준으로 확대, 2)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학생 등록금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사립대학의 기부금 손금 범위를 국·공립대학과 동일하게 100% 적용하고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 비율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등 세제 개선을 통한 대학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교육>에서는 이번 대학총장세미나에서 결의된 대학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분야별 소위원회의 교육인적자원부 건의문을 게재한다(지면 관계상, 7개 소위원회 중 산학협력, 지역균형발전, 국제화, 대학재정확충 등의 4개 소위원회의 건의내용만을 게재하였다).

## 1. 산학협력 소위원회

- 1) 산학협력단을 대학의 조직으로 명기하여 위상 및 역할 재정립
  - 산학협력단은 대학 내에 별도 법인으로 설립됨.
  - 사립대학은 물론 국·공립대학에서조차 대학 구성원들이 산학협력단을 독립적인

외부기관으로 인식하여 업무상 역할분담 및 협조 등에 어려움이 있음.

- 국립대학의 경우 국립대학설치령을 개정하여 산학협력단을 대학의 조직으로 명기하는 것이 필요함.
- 산학협력단의 통상업무(인사, 급여, 구매 등)가 대학의 행정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업무 처리 범위 등의 제도화가 필요함.

## 2) 산학협력단의 세금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보완

- 세무서는 산학협력단을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하고 있음. 이는 산학협력단의 세금 관련규정이 법령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임.
- 산학협력단에 부과되는 세금과 수수료가 대학에 부과되는 것과 동일하게 되도록 관련 법령(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개정이 필요함.

## 3) 산학협력단의 회계 간소화 및 회계 프로그램 개선

- 산학협력단이 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재원은 현실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비로 복식부기로 관리할 만한 실익이 없는 회계임.
- 정부(교육인적자원부)가 배포한 회계 프로그램이 기존의 교비회계 프로그램과는 호환성이 적어 업무 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산학협력단의 회계 간소화를 위한 법 및 제도의 개선 방안 수립이 요구됨.

## 4) 산학협력단의 교비 전입 범위 명시 및 허용

- 국·공립대학의 경우 일반 회계 및 기성회계, 발전 기금 등의 산학협력단 전입 허용 범위가 명확하게 명기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사립대학의 경우 교비 회계로부터 산학협력단으로의 전입은 산학협력단 설립 당시를 제외하고는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원 부족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 사립대학에 대하여 대학이 산학협력단으로 교비를 최소한 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전입 범위 및 내용 등을 재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5) 산학협력사업의 대학 대응자금 관리 방안 개선

- 동일 사업에 대하여 외부지원금은 산학협력단이, 대응자금은 대학이 이원화된 관리를 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 계약에 의하여 명시된 산학협력사업의 대학 대응자금은 대학 회계에서 산학협력단 회계로 자금이 진출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함.

## 6) 독립 캠퍼스별 산학협력단 설치 허용

- 현행 법령에는 한 대학에는 한 개의 산학협력단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독립된 캠퍼스의 경우, 캠퍼스별 독립적인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법률적 보완이 필요함.

## 7) 사립대학의 학교기업 회계를 산학협력단 회계로 이관

- '산학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

를' 제36조제2항에 의거하여 학교기업의 수입은 사립대학의 경우 교비 회계의 수입으로, 국공립대학은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처리되어 있음. 학교기업 운영을 위한 이원화된 행정 처리가 필요함.

- 교육은 대학이, 학교기업을 포함하는 산학협력사업은 산학협력단이 총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함.

#### 8) 국·공립대학에 설립되는 학교기업에 사업자 등록증 교부

- 국·공립대학에 설립되는 학교기업은 사업자 등록증 없이 고유번호만을 부여 받음.
- 국·공립대학에 설립되는 학교기업도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보완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함.

#### 9) 산학협력 전담 교원을 위한 제도 개선

- 전임교원의 수업시간 감면 등을 포함하는 전임교원 산학협력 전담 교수 운영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수립하고 이를 관련 법 및 규정(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명기하는 것이 필요함.
- 산학협력을 전담하기 위하여 임용한 계약제 교원을 대학의 교원으로 인정하는 법 및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산학협력 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산학협력 전담 겸임 교원을 교수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대학이 별도로 추가 임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10) 산학협력사업에 대학 보유의 자산 및 현금 출연 허용

- 국·공립대학의 경우,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토지 및 건물 등)은 물론 기성 회계 예산을 산학협력 관련사업에 자유롭게 출연하는 것이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불가능함.

- 대학은 테크노파크와 같은 정부지원 산학협력 사업을 대학 내에 유치하여도 국유재산관리법 규정 때문에 대학 보유자산을 테크노파크에 출연할 수 없음. 기성 회계 예산 역시 감사원 감사 등으로 출연이 곤란함.
- 국·공립대학은 대학 내에서 추진되는 정부지원 모든 형태의 산학협력 사업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토지 및 건물)과 기성회 예산을 자유롭게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및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 11) 산학협력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산학협력은 대학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임.
- 기업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세제 감면, 정부지원 연구개발 사업 참여 혜택 부여 등과 같은 산학협력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정부 부처 간 협조 유도 및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함.

#### 12) 산학협력단 운영 및 내실화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 추진 및 시설 확충 지원

- 대부분의 대학이 산학협력단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시적이라도 산학협력단의 운영 및 내실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재정지원 사업이

필요함.

- 정부지원 사업(연구사업 포함)의 간접비 비율을 상향 인정하여 주는 것이 필요함.
- 대학에 산업단지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인력양성기관의 설립 및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공동실험센터의 건립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13) 소규모 단위 산학협력 사업 및 지방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 소규모 대학들에서의 산학연 인력교류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함.
-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방대학에 대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
- 각종 평가에 지방 소재 대학 또는 산업체의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 14) 균형 있는 산학연협력 사업의 추진

- 산학연협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기업과 대학의 직접적인 접촉을 강조하고 있어 대학원을 갖추고 있는 연구중심대학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실정임.
- 대학의 국제경쟁력 평가, 국내 평가에서는 SCI 논문실적으로 대표되는 연구실적이 여전히 중요함.
- SCI 논문실적 또는 산학협력이라는 양극으로 치우치는 것을 지양하고 균형 잡힌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필요함.

### 15)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 계약 체결권 부여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학협력단장을 계약 주체로 불인정하는 사례가 빈

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산학협력단의 성격 및 위상을 정부 타 부처 및 기업에 홍보하는 것이 필요함.

### 16) 지적재산권 관련 발명구분에 대한 기준 정립

- 국·공립대학의 교직원이 재직 시 취득한 지적재산권은 현재 대부분 직무발명으로 간주되며, 자유발명의 범위 등이 대단히 모호함.
- 자유발명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열거함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 17) 산학연협력 사업 담당자의 전문화

- 산학연협력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임.
- 정부 사업 담당자의 장기보직이 필요함.
- 정부 차원에서 대학에 근무하는 산학협력단 교직원에 대한 전문화 교육 등이 요구됨.

### 18) 산학연협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우수사례 확산 보급 사업 추진

- 산학연협력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시키고 또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산학연협력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종합창구 개설 및 유사 지원 사업의 통합화가 필요함.

### 19) 건의사항 추진 현황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 구축

- 지금까지 대정부 건의는 꾸준히 있어 왔

으나 건의사항이 어떻게 추진 및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았음.

- 향후에는 대정부건의를 피드백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가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2. 국제화

1) 복수학위제와 공동학위제에 관한 명확한 개념 및 취득기준 제시. 복수학위, 공동학위 수여와 관련한 보다 유연한 규정 제정을 위한 제도 개혁 요망

- 일선 대학에서 복수학위, 공동학위제도 운영 시 교육부 제한이 많음. 예컨대 이공계 관련 분야의 복수학위, 공동학위제 운영은 비교적 용이하나 인문계 분야에서는 차별적 규정 적용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음.

2) 국내 대학의 해외분교 설립·운영에 관한 기준(법률, 시행령) 개선

- 국제화 증진에 있어서 국내대학의 해외분교 설립이 많이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한국과 교류대상국과의 학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국내 대학의 학제와 대학에 대한 규정만 고수해야 하는 현 교육부 정책으로는 원활한 해외분교설립이 어려움.

3) 대학의 국제화 노력에 정부의 재정지원확대 요망.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외국인 교원 유치 확대, 권역별 기숙사 건립, 어학센터 설립 등을 위한 정부의 기금 마련 요망

- 국제화는 교육 선진화와 직결되어 있으며

로 종합적 국제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대학 자체의 예산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정부 재정 지원이 필수적임.

4) 한국어·한국학 육성에 대한 교육부 지원 요청

- 한국어·한국학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점차 늘어나고 있는 국내·외 한국어·한국학 전문가 수요를 충당할 필요가 있음.

## 3. 교육학술개발

1) 기본 인식

- 대학에서 교육활동은 연구, 사회봉사 등 대학의 고유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활동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교육활동의 활성화를 전제로 하여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등교육의 발전과 성장이 가능함.

2) 대학의 노력

- 대학 내 교육활동의 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 대학 내 교수학습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 교원에 대한 교육·연수 등 지원을 강화함.
  - 교원의 임용 및 관리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함. 특히 연구업적 위주의 교원 임용과 재임용, 업적평가의 개선을 통해 교육과 연구 활동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도록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시기적절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과정의 체계

- 적인 관리시스템 등의 확보가 필요함.
- 우수한 인재의 양성에 필요한 교양교육 과정의 강화가 필요함.
- 학생의 학습활동 강화를 위한 대학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함.
- 교육활동에 대한 타당하고 신뢰가 가는 지표를 개발하고 적용하도록 대학평가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함.
- 대학의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적 수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대학 내의 새로운 인식의 공유와 강화가 필요함.

### 3) 대정부 건의사항

- 대학의 교원 확보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우수한 교양, 전공교육의 수행을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교원확보가 필요하나 개별 대학의 수준에서는 교원확보를 위한 재원 투자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기초 교양 및 전공 교육의 안정화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수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교원제도 운영과 재정적 지원 필요함.
  - 강의 전담 교수, 비정년 트랙 교수 등 새로운 교수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여 교육(특히 교양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함.
  - 새로운 교수제도는 전임강사와 시간강사 중간 단계의 교원 등급
  - 강의 전담 교수와 같은 새로운 교수제도에 의한 교원을 전임교원으로 일정

정도 인정해 주는 제도적, 법적 지원 필요함.

- 제도 운영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비정년, 강의 전담 교수에 대한 4대 보험 지원 등).
- 또한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정부의 일관된 정책 유지와 의지 표명이 필요함.

## 4. 대학 재정 확충

### 1)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 대학의 최선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나, 한국의 경제발전 단계에 맞도록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OECD 국가 평균수준인 GDP 대비 1% 수준으로 확대해야 함.
-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원의 확보를 위해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7.6을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지정해야 함.

### 2) 대학구조개혁 지원 사업의 지원금액이 매우 불충분


- 학생 수 조정에 따른 막대한 등록금 감소를 보전하기에는 교육부의 지원금액의 규모가 매우 낮음.
- 연구비 지원 시 대학의 매칭 펀드(matching fund) 비율을 낮추고, 연구비 간접경비(overhead)의 비율을 대폭 현실화함으로써 등록금의 감소를 보전할 수 있어야 함.

### 3) 세제 개선을 통한 대학지원

- 사립대학의 법인 기부금 손금 범위를

- 국·공립대학과 동일하게 100%로 해야 함.
- 학교가 식당 등 학생복지시설의 임대를 통해 아웃소싱 하는 경우에도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 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는 국·공립 모두 제외해야 함.
- 산합협력단 운용은 각 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미비점이 충분히 보완되어야 함.

- 4) 민자유치를 통한 교육시설 설치 시 세제지원
- 대학이 BTL, BTO, BOT 등을 활용하여 교육시설을 확충할 경우 세제면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 5) 대학의 자산기금 운용의 효율화
- 대학의 자산기금 운용에 있어서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해야 함. 

## 특·고·안·내



본지를 더욱 알찬 내용으로 꾸며줄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교육 관련 논설, 대학에서의 연구·교육  
및 사회 봉사 활동 중에서 대학 사회에  
시사를 줄 수 있는 글, 최근에 발간된  
국내·외 대학교육 관련 서적에 대한 서평,  
본지에 게재된 글에 대한 반론 등

**보 내  
실 곳**

(우)150-74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기획개발부  
전화: 783-3891 팩스: 783-3645 전자 우편: infor@kcue.or.kr